

시 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6768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0호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인사과장 예산담당관 환경정책팀장			

- 미세먼지 공동대응 및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
한·중 환경협력센터 협력관 파견·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2019. 10.

**기 후 환 경 본 부
(환경정책과)**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 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input type="checkbox"/>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탁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input type="checkbox"/>	■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input type="checkbox"/>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협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을 발생 억제 대책 등	<input type="checkbox"/>	■	
정책수립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의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input type="checkbox"/>	환경부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input type="checkbox"/>	■	
정책집행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input type="checkbox"/>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input type="checkbox"/>	
기타사항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미세먼지 공동대응 및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

한·중 환경협력센터 협력관 파견·운영계획

환경부 및 중국과의 미세먼지 공동대응 및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환경협력센터 협력관』을 파견·운영하고자 함

I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와 기술 교류,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등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상호협력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함
-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공무원의 해외근무 등)**

□ 추진경위

- '19. 6.11. **한·중 환경협력센터 협력관 파견 요청**(환경부 → 서울시)
- '19.10. 8. **직무파견 사전협의 '적정' 검토**(조직담당관 → 인사과)

□ 파견 필요성

- **대기질개선·기후변화대응 등 한·중간 환경협력 및 공동대응 확대·강화 필요**
 - 중국발 대기오염 물질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관련 근거 축적에 따라, 代중국 환경협력 강화 여론 확대 및 중요성 증가
※ 미세먼지 국내외기여도 : 국내(45%) - 국외(55%), 서울연구원 2016년
 - 기후변화, 에너지·폐기물 등 환경 분야 전반에 대해 협력 확대 기반 마련

- 중국 중앙·지방정부와 및 각급 연구기관과 교류, 협력 확대
 - 대기질 정보 공유·원인 규명 공동연구, 대기오염방지 사업 협력 활성화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 활성화
 - 서울-베이징 고정연락관 및 공동연구단 운영, 대기질 개선 포럼 등 그간의 서울시-베이징시 환경협력 사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II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요

□ 일반현황

- 기관명 : 한·중 환경협력센터
- 설립근거 :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 소재지 : 중국 베이징('18. 6.개소),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내 개소
- 설립목적 :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른 양국간의 모든 환경 분야 협력사업과 활동을 총괄 조율하고, 진행사항을 평가·관리
- 기능
 - 한·중 환경협력 종합지원, 한·중 환경협력 사업의 발굴·평가 및 관리
 - 정책 및 전문가 교류활동 추진, 한·중 환경협력 홍보
 - 한·중 환경산업 기술 교류 및 협력 추진 등
- 조직 : 1위원회(국장급), 1센터장(과장급), 4팀



* 장기적으로 양국에서 각각 7~10명 내외를 파견하여 총 15~20명 규모 구성 협의

□ 협력관 운영개요

- 파견근거 :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환경부 훈령, '19. 5.13. 시행)
- 근무기관 : 한·중 환경협력센터
- 파견인원 : 1명(환경 5급 또는 화공 5급)
- 담당업무 : 정책교류협력팀 또는 공동연구팀 팀장으로 배치 예정
- 파견기간 : 파견일로부터 1년 ※ 구체적 일자는 인사과와 협의 / 필요시 연장
- 공개모집 후, '20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파견 예정(인사과)
- 직무요건
 - (경력)국제 환경협력분야 업무경력 2년 이상인자 또는 환경분야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외국어 능력)직무 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자

□ 협력관(파견자) 직무

- 한·중 환경협력 분야 과제 발굴
- 중국 환경정책 동향 파악 및 비교·분석
- 한·중 환경정책 협력 및 교류(정책 교류회, 세미나 등)
- 베이징시 등 중국 지방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 한·중 환경협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업무
- 그밖에 한·중 환경협력 확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등
※ 구체적인 업무는 파견 후, 센터 조직 및 업무상황에 따라 사무분장

□ 선발 방식 : 추천자 공개모집

- 인사과에서 공개모집 선발, 파견
 - 업무에 대한 전문성, 현지적응력, 외국어 구사력 등 종합고려

□ 선발 · 관리절차

- 파견자 공개모집·선발 및 인사명령 : 인사과
- 환경부(한·중 환경협력센터)와 파견자 직무협의 : 기후환경본부
- 파견자 수당 지급·관리 : 파견자 원소속 부서

□ 성과평가

- 한·중 환경협력센터장이 파견자의 근태 및 업무성과를 상·하반기별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 및 서울시에 보고

□ 파견자 처우 및 수당등 지급

-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수당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
국외 파견공무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조항 적용
 - 지급수당 : 재외근무수당, 주택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수당, 항공료
※ 시 총액인건비 포괄예산에서 지급하며, 항공료는 파견공무원 및 배우자·자녀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지급
- 지급방법
 - 재외근무수당, 주택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 분기 1회 지급
 - 의료보험료 : 연 1회 지급
⇒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보수(101-01) 예산을 재무과로부터 파견자 원소속
부서에서 재배정 받아 지급
 - 왕복 항공료, 국외이전비, 준비금 : 1회 지급(지급 원인발생시)
⇒ 환경정책과(사업명 :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의 국외여비에서 지급

IV**행정사항**

부서·기관	협조사항
인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자 인사관리 · 파견자 공개모집 및 선발, 인사발령
파견자 원소속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자 수당 지급, 관리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자 수당 재배정

VI**추진일정**

- 파견대상자 공모 및 선발(인사과) : '19. 11월~
- 파견준비 및 파견 : '19.11~1월

붙임

1. 한·중 환경협력센터 현황
2. 한·중 환경협력계획 주요내용
3. 파견자 수당 지급근거 및 수당산출 내역
4. 직무파견 사전협의 검토서(조직담당관)
5. 관련 규정

불 임 1 한·중환경협력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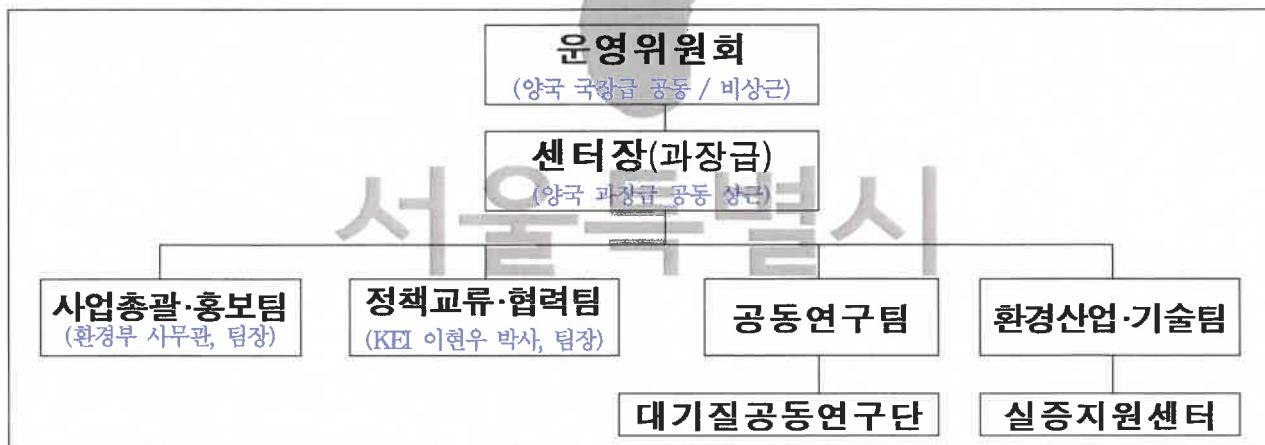
□ 설립 개요

- (목적) 양국간 대기, 토양, 물 등 환경분야 협력사업을 총괄·관리하고 대(對) 중국 환경협력 교류 지원
- (근거)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 및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부속서)
* '17.12.14, 한·중 정상 임석하에 양국 환경장관 서명
- (개소) 중국 환경과학연구원내 개소(베이징, '18.6월)

□ 기능

- 한·중 환경협력 종합지원
- 한·중 환경협력 사업의 발굴·평가 및 관리
- 정책 및 전문가 교류활동 추진, 한·중 환경협력 홍보
- 한·중 환경산업 기술 교류 및 협력 추진 등

□ 조직



【 양국 인력 현황 】

- 1) 국장급(비상근) : 양국 각 1명 (한국 :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중국 : 관련부처 국장급) / 회의는 양국 교차 개최
- 2) 센터장(상근) : 양국 각 1명(서기관급)
- 3) 한국 파견인력(총 4명) ※ '19. 4.기준
 - 환경부 2명(센터장/4급 1, 사무관 1),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1, KTI(환경산업기술원) 1명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명 추가파견 예정
- 4) 중국측 상주인력(총 5명) : 중국환경과학연구원 부센터장, 연구인력 4명

불 임 2 한·중환경협력계획 주요내용

□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

- (배경) 자국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국간 환경협력 강화 필요성
- (우선 협력분야) 대기, 물, 토양 및 폐기물, 자연보전
- (협력방식) 정책교류, 산업·기술 협력, 공동연구, 기타 양국이 합의한 협력 형태
- (이행규정) 양국 환경장관이 전반적인 진전과 성과를 감독하고 이행을 위한 지침 제시
- (이행기관)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과 활동사항 협의 및 이행 지원

□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한·중 환경협력계획 부속서)

- (주요기능) 양국간 공동선언문, 양국 환경부간 한·중 환경협력계획 이행 등 양국 환경협력의 종합적 지원
- (기능)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 등 기존 연구·기술 협력사업 통합 관리 및 중국과 상시 환경정책 교류 추진
- (역할) 한·중 환경협력 MOU('14)와 한중 환경협력계획('18-'22)에서 합의한 양국 협력사업 이행 사무국 역할 수행
- (센터장) 한·중 양국에서 공동센터장 임명 또는 교대로 센터장 임명하는 방안 추후 협의 확정
- (운영위원회) 양국 환경부 국장급이 공동의장을 맡아 센터 업무계획,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

불 임 3 파견자 수당 지급근거 및 수당산출 내역

□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 수당내역(안)

- 파견자 수당

구 분	지 급 액 (5급 기준)	비 고
재 외 근 무 수 당	· \$3,019/월	· 중국 : '아' 지역, 달러화 지급국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별표11)
가 족 수 당	· \$754.75/월 · \$60/월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 · 자녀(20세미만) : \$60/1인
자 녀 학 비 수 당	· \$600/월 및 초과분의 65% 추가지급	· 초·중·고 : \$600/월 및 초과액의 65%까지 추가지급 가능
주 택 수 당	· \$3,174.5/월	· 재외공무원 주택임차료 지원 상한선 (외교부, 5급 이하 기준 준용) · 초과분은 개인부담, 소개비 정부부담, 위약금 개인부담
의 료 보 협 료	납입보험료의 80% 지원 (의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또는 연간기초공제액이 연간납입료의 10% 이상인 보험 가입)	

- 국외여비 지급

구 分	지 급 기 준
항 공 료	· 2등석 정액(본인, 배우자 및 미혼자녀)
국 외 이 전 비	· 15m ² 이하 이사화물 : 실비 · 15m ² 초과 이사화물(25m ² 상한) : 15m ² 이하 이사화물 실비 + 15m ² 초과 25m ² 이하 이전비 실비의 50% 금액
준 비 금	· 정착지원금(\$2,000, 1회),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등

〈조직담당관- 12920호, '19.10. 8〉

한중환경협력센터의 우리시 직원 직무파견 (결원보충) 사전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임

파견개요

- 파견인원 : 환경 5급 또는 화공 5급 1명 (신규)
- 파견기간 : 파견일로부터 1년
- 근무기관 : 한중환경협력센터 (중국 베이징 소재)
- 파견자 직무
 - 한중 환경협력 분야 및 과제 발굴
 - 중국 환경정책 동향 파악 및 비교·분석
 - 베이징시 등 중국 지방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검토결과 : 적 정

- 한중환경협력센터는 양국 환경장관이 체결한 한중환경협력계획에 따라 설립('18.6월)되었으며, 양국 간 환경 분야 모든 협력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
- 양국 간 중앙·지방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기능 활성화 및 정책교류 다양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지자체 공무원 파견 필요성 인정됨
- 행정안전부의 시도결원보충(직무파견)업무 처리지침은 공무원의 해외파견을 외국자매결연도시와 국제교류 협력 증진 등을 위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파견요청은 적정함

불 입 5 관련규정

□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9조'

제9조(파견근무)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 ①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의 계급에 의한다.